

**부속서 4-가**  
**약속 이행 기간**

이 부속서의 목적상, “5년” 과 같은 연수란 조들의 각 규정의 완전한 이행이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명시된 연수 내에 개시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2022년 2월 28일” 과 같은 확정일이란 특정된 약속의 완전한 이행이 개시되는 기간의 종료시점을 말한다.

주: 조가 특정 항에 대한 언급 없이 아래에 열거된 경우, 그 조의 모든 규정에 명시된 이행 기간이 적용된다.

**브루나이다루살람**

제4.13조      공인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      2022년 2월 28일

제4.18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2023년 3월 31일

**캄보디아**

제4.9조      도착 전 처리      5년

제4.11조      상품의 반출

2. 상품의 반출 기간(가능한 한  
도에서 상품의 도착과 필요한 정  
보의 제출로부터 48시간 내)      5년

6. 부패성 상품의 반출(가능한 한  
도에서 6시간 내)      5년

8. 부패성 상품에 대한 보관 시설  
및 절차 5년

**제4.12조 정보기술의 적용**

2. 선적의 도착 전 정보 제출 그리  
고 위험관리를 위한 전자 또는 자  
동화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기술  
사용 5년

4.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  
서의 법적 동등성 5년

5. 국제 표준 또는 방식 5년

6.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  
의 수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들과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  
의 협력 5년

**제4.13조 공인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 5년**

**제4.15조 특송화물**

1. 다음을 포함하는 특송화물에 대  
한 절차의 적용범위

가. 도착 전 처리 5년

나. 정보의 단일 제출 5년

다. 서류 요건의 최소화 5년

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경우 6시간 내에 특송화물의 반출 5년

마. 특송화물의 중량 또는 관세가격에 관하여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취급 5년

제4.19조 관세 협력 5년

중국

제4.4조 일관성 5년

인도네시아

제4.10조 사전심사결정 2022년 2월 28일

제4.14조 위험관리 2022년 2월 28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제4.10조 사전심사결정

2. 신청인의 법적 대리 또는 등록 3년

3. 사전심사결정 발급을 위한 절차	3년
7. 사전심사결정의 유효성	5년
8. 신청인에게 사전심사결정의 철회, 변경 또는 무효화의 이유 통보	5년
9. 사전심사결정의 소급적인 철회, 변경 및 무효화	5년
10. 사전심사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5년
11. 사전심사결정 절차의 공표	3년
12. 사전심사결정에 관한 정보의 공표	3년

**제4.11조      **상품의 반출****

1. 간소화된 통관 절차의 채택 또는 유지	3년
2. 상품의 반출기간(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과 필요한 정보의 제출로부터 48시간 내)	3년
3.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상품의 선별	3년
4.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한 최종 결정 전 상품의 반출	3년

- |                                   |    |
|-----------------------------------|----|
| 5.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 또는 몰수할 권리       | 3년 |
| 6. 부패성 상품의 반출(가능한 한도에서 6시간 미만)    | 5년 |
| 7. 조사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부패성 상품에 우선순위 부여 | 3년 |
| 8. 부패성 상품에 대한 보관 시설 및 절차          | 5년 |

**제4.12조      정보기술의 적용**

- |   |    |
|---|----|
| 2. 선적의 도착 전 정보 제출 그리고 위험관리를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기술 사용   | 3년 |
| 3. 전자적 형태의 무역행정문서를 대중에 공개                                   | 3년 |
| 4.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의 법적 동등성                                 | 5년 |
| 5. 국제 표준 또는 방식  | 5년 |
| 6.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의 수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들과 그리고 국제 포럼에서의 협력 | 5년 |

**제4.13조      공인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      5년

제4.14조 위험관리

1. 위험관리시스템의 채택 또는 유지 3년

제4.15조 특송화물

1. 다음을 포함하는 특송화물에 대한 절차의 적용범위

가. 도착 전 처리 3년

나. 정보의 단일 제출 5년

다. 서류 요건의 최소화 5년

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경우 6시간 내에 특송화물의 반출 5년

마. 특송화물의 중량 또는 관세가격에 관하여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취급 5년

바. 관세 및 조세가 징수되지 않을 최소허용 선적 가격 또는 관세부과 대상 액수의 규정 5년

2. 상품의 반입을 검사, 유치, 압수, 몰수, 또는 거부하거나 사후심사를 수행할 권리. 추가 정보 및 비자동 허가 5년

요건을 요구할 권리.

말레이시아

제4.15조 특송화물 2022년 2월 28일

미얀마

제4.4조 일관성 5년

제4.5조 투명성 5년

제4.6조 문의처 2년

제4.7조 통관 절차 5년

제4.9조 도착 전 처리 5년

제4.10조 사전심사결정

1. 사전심사결정의 발급 및 사전심사  
결정의 종류(나호와 관련) 5년  
(원산지 규정)

2. 신청인의 법적 대리 또는 등록(제1  
항나호와 관련) 5년  
(원산지 규정)

3. 사전심사결정 발급을 위한 절차  
(제1항나호와 관련) 5년  
(원산지 규정)

4. 사전심사결정의 발급 일정(제1항 나호와 관련)	5년 (원산지 규정)
5. 신청인에게 사전심사결정의 발급 거부 통보(제1항나호와 관련)	5년 (원산지 규정)
6. 추가 정보가 명시된 기간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사전심사결정 요청의 거부(제1항나호와 관련)	5년 (원산지 규정)
7. 사전심사결정의 유효성(제1항나호 및 다호와 관련)	5년 (원산지 규정 및 평가)
8. 신청인에게 사전심사결정의 철회, 변경 또는 무효화의 이유 통보(제1항가호, 나호 및 다호와 관련)	5년 (분류, 원산지 규정 및 평가)
9. 사전심사결정의 소급적인 철회, 변경 및 무효화(제1항가호, 나호 및 다호와 관련)	5년 (분류, 원산지 규정 및 평가)
10. 사전심사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제1항나호와 관련).	5년 (원산지 규정)
11. 사전심사결정 절차의 공표(제1항나호와 관련)	5년 (원산지 규정)
12. 사전심사결정에 관한 정보의 공표(제1항나호와 관련)	5년 (원산지 규정)

**제4.11조      **상품의 반출****



	2. 상품의 반출 기간(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과 필요한 정보의 제출로부터 48시간 내)	5년
	3.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상품의 선별	5년
	4.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에 대한 최종 결정 전 상품의 반출	5년
	6. 부패성 상품의 반출(가능한 한도에서 6시간 미만)	5년
<b>제4.12조</b>	<b>정보기술의 적용</b>	5년
<b>제4.13조</b>	<b>공인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b>	5년
<b>제4.14조</b>	<b>위험관리</b>	
	2. 위험관리의 설계 및 적용	5년
	3. 고위험 탁송물에 통관 통제의 집중 및 저위험 탁송물의 반출 신속화. 위험관리의 일부로 탁송물의 무작위 선별.	5년
<b>제4.15조</b>	<b>특송화물</b>	
	1. 다음을 포함하는 특송화물에 대한 절차의 적용범위	

가. 도착 전 처리	5년
나. 정보의 단일 제출	5년
다. 서류 요건의 최소화	5년
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경우 6시간 내에 특송화물의 반출	5년
마. 특송화물의 중량 또는 관세가격에 관하여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취급	5년
바. 관세 및 조세가 징수되지 않을 최소허용 선적 가격 또는 관세부과 대상 액수의 규정	5년

**제4.16조 사후심사**

2. 사후심사를 위한 인 또는 탁송물의 선별	5년
3.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서 사후심사에서 획득된 정보의 사용	5년
4. 위험관리 적용 시 사후심사의 결과 활용	5년

**제4.17조 반출 시간 연구** 5년

제4.19조 관세 협력 5년

제4.20조 협의 및 접촉선 5년

## 베트남

제4.9조 도착 전 처리 2023년 12월 31일

제4.10조 사전심사결정 2021년 12월 31일

제4.11조 상품의 반출 2021년 12월 31일

제4.13조 공인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 2023년 12월 31일

제4.14조 위험관리 2023년 12월 31일

제4.15조 특송화물

### 1. 특송화물에 대한 절차의 적용범위

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경우 6시간 내에 특송화물의 반출 2023년 12월 31일

제4.16조 사후심사 2021년 12월 31일